

앱카드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 약관	개선안	비고
<p>제 8 조("서비스" 해지 및 이용 제한)</p> <p>② "회사"는 "가입 고객"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"서비스" 이용 계약을 <u>해지하거나 "서비스"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가입 고객"이 <u>이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</u> 2. 이용정지·해지 등 "가입 고객"이 "대상카드"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(삭제) 3. "가입 고객"이 관계법령, 감독규정, 감독기관의 지침, "회사"의 약관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(삭제) 4. "모바일 기기"의 명이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"가입 고객"이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5. 타인의 "카드번호 등"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"카드번호 등"을 등록하는 경우 6. "서비스"의 이용 목적을 벗어난 불합리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(삭제) 7.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	<p>제 8 조("서비스" 이용정지 및 해지)</p> <p>② "회사"는 "가입고객"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"서비스"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가입고객"의 고의·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.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"서비스"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. 타인의 "카드번호 등"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"카드번호 등"을 등록하는 경우 <p>③ "회사"는 "가입고객"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영업일 전에 "서비스"이용계약을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10 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"서비스"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(단, 제 5 호, 제 6 호의 경우 즉시 해지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가입고객"의 고의·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	<p>공정위 지적사항 반영</p>

현행 약관	개선안	비고
<p>8.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</p> <p>9. 분실, 도난 등 비정상적인 “모바일 기기”에서의 거래를 막기 위해 3G 및 4G 의 이동통신망이 아닌 Wifi 등 기타 무선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경우(삭제)</p> <p>10. 관계법령이나 감독규정, 감독기관의 지침, “회사”의 약관과 지침 등에 의해 “서비스” 제공이 곤란한 경우(삭제)</p> <p>11. 신청 내용에 허위, 기재 누락, 오기가 있는 경우(삭제)</p> <p>③ 제 ②항의 조치에 대하여 "가입 고객"은 "회사"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적당하다고 "회사"가 인정하는 경우에 "회사"는 즉시 “서비스”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.</p>	<p><u>현저히 어려운 경우</u></p> <p>2.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“서비스”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“가입고객”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,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</p> <p>3. 타인의 “카드번호 등”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“카드번호 등”을 등록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</p> <p>4. “모바일 기기”의 명이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“가입 고객”이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</p> <p>5.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</p> <p>6.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</p> <p>④ 제②,③항의 조치에 대하여 "가입 고객"은 "회사"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적당하다고 "회사"가 인정하는 경우에 "회사"는 즉시 “서비스”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.</p> <p>√ 제②항 신설</p> <p>√ 제③항(기존 ②항) 내용 수정 및 2, 3, 6, 9, 10, 11 호 삭제 (삭제에 따른 호 변경)</p> <p>√ 제②항 신설에 따른 ③항을 ④항으로 변경하고, 제④항 본문에 ③항 추가</p>	<p>공정위 지적사항 반영</p>